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01. 3.27. 병무청 훈령 제458호
개정 2002. 4. 9. 병무청 훈령 제478호
개정 2004. 2.11. 병무청 훈령 제538호
개정 2005. 2. 1. 병무청 훈령 제591호
개정 2005. 6.30. 병무청 훈령 제613호
개정 2005. 8. 3. 병무청 훈령 제614호
개정 2005.11. 9. 병무청 훈령 제626호
개정 2006.12.29. 병무청 훈령 제686호
개정 2007.11.19. 병무청 훈령 제722호
개정 2008. 4.16. 병무청 훈령 제772호
개정 2008.11.13. 병무청 훈령 제816호
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55호
개정 2009.12.10. 병무청 훈령 제906호
개정 2010. 2.12. 병무청 훈령 제921호
개정 2010.12.20. 병무청 훈령 제944호
개정 2012. 8. 3. 병무청 훈령 제1012호
개정 2012.12.21. 병무청 훈령 제1039호
개정 2013. 4.19. 병무청 훈령 제1067호
개정 2013. 5. 8. 병무청 훈령 제1099호
개정 2013.12. 6. 병무청 훈령 제1152호
개정 2014. 5.23. 병무청 훈령 제1199호
개정 2015. 5.19. 병무청 훈령 제1256호
개정 2016. 1.18. 병무청 훈령 제1319호
다른규정개정 2016. 7.22. 병무청 훈령 제1350호
개정 2016.11.30. 병무청 훈령 제1398호
전부개정 2016.12.21. 병무청 훈령 제1426호
개정 2018. 5.29. 병무청 훈령 제1525호
개정 2019.12.11. 병무청 훈령 제1598호
개정 2020. 6.30. 병무청 훈령 제1716호
개정 2020. 7.17. 병무청 훈령 제1723호
전부개정 2021.12.31. 병무청 훈령 제1848호
개정 2023. 3. 2. 병무청 훈령 제1949호
개정 2024. 3. 8. 병무청 훈령 제2054호
개정 2025. 5. 2. 병무청 훈령 제2141호
개정 2026. 8. 12. 병무청 훈령 제2227호
개정 2026. 10. 19. 병무청 훈령 제22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65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4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 제137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의2, 제156조 및 제15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 제99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무원"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이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5.2.>

제4조(업무의 주관) ①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

②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3. 이 규정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인천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6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람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고발결과 등 관계 서류 일체를 변경된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만일 고발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자원관리하고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

제2장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①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시 부득이하게 출·귀국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허가기간 범위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간의 시작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90일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제2호의 국외여행목적과 제5호나목·다목의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 2025.5.2.>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3.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제7조(허가의 신청 및 안내)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

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
3.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
4.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

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3.8., 2025.5.2.>

⑦ 지방병무청장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외 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6.10.19.>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share.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 관계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1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른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관리·교부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허가신청자의 최종 병역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의 국가명 및 외국의 성명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철저히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1. 승선고용계약서: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
2. 업무상 출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에는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
3. 그 밖의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

⑥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Permit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3. 8.>

1. 허가번호는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 허가구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허가번호 부여 방식(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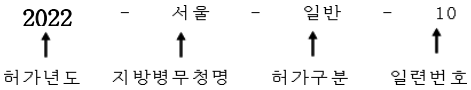

2. 제1호의 허가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
   가. 일반: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나. 일반/연장: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다. 이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라. 이민/연장: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⑦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
2. 국외여행허가서 각 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

⑧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제9조(허가 처분의 후속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허가 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개정 2026.10.19.>
2.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확인.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학교의 누리집, 학생비자

(입학허가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등을 통해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의 확인을 받은 재학생은 제외 <개정 2024. 3. 8.>

3. 국외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최종 출소일까지 재감실태를 확인(1년 미만의 형은 3개월 마다, 1년 이상의 형은 6개월 마다)하여, 출소 후에도 귀국하지 않을 시 제16조에 따라 처리
4. 국외여행허가 처리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유지·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허가 거부처분의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하게 정하여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허가의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 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합철·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병무지청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다.

1.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
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제12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목적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②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한다)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교전산망(G4K)이 연결된 공관은 스캔한 전자파일을 외교전산망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개정 2026.10.19.>
2.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9.>

④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허가의 제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2.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이 국외이주하려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
4.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신설 2023. 3. 2.>

제14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는 편입과 동시에 별표 1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14조의2(재외국민 2세 등 국외이주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2. 영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도 25세부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2.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199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자로 관리. 다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3. 본인이 18세 이후(1993년 이전 출생자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자로 관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4세가 되기 전에 영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8.]

제3장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제15조(허가기간 만료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이하 제3장부터 제6장까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라 한다)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안내대상: 1년 이상 장기체류자
2. 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3.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 중인 사람에게 보낼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도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5.5.2.>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거부처분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되었거나 관리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발생 및 해제 관리에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외이주자 등 관리

제17조(국외이주의 범위 등)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3. 2.>

제18조(국외이주자의 관리) ① 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의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8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국사항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외국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 통지의 송달 관련 증빙자료 등 국외이주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제19조(국외이주사유 보충역 편입자 등의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리 및 관리한다. <개정 2023. 3. 2.>

제20조 삭제 <2026.10.19.>

제21조(국내 수학자의 교육과정 및 기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4)에서 규정하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나. 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3)에서 규정하는 상한 연령을 3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다. 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제22조(영리활동의 범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제23조(영리활동자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국외이주자의 보험 및 연금 가입사실 등을 연 2회(5월, 10월)이상 조회하여 영리활동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 ① 병무청장은 영주권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자진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

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5.2.>

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
3.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다.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부 또는 모의 국외파견 주재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비대상자인 경우에는 비대상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회송
2. 국내 주소, 연락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희망 일자 등 각 기재사항 확인 보정
3. 신청서 뒷면의 유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설명
4.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5.5.2.>

1. 신청일부터 6개월(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조치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
3. 현역병 모집에 의해 선발된 사람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

⑥ 삭제 <2025.5.2.>

⑦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영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연기의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5.5.2.>

⑧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본조신설 2025.5.2.]

제25조(전시근로역 편입)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그 해 1월 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제26조(국외이주 목적의 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그 연기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병

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및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35조제9항 또는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재복무 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별표 4의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에 따른다)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다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가 제22조에 따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마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이주 목적 외의 허가 취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시작일부터 11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또는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중에 귀국한 사람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및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조제2호에 따른 재학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편입 또는 편입이 취소되는 등 신분이 변동되거나 분할복무 등 복무사항이 변동되어 허가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원관리부서에서는 신분 또는 복무사항 변동 사실을 국외여행허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취소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28조(허가 취소의 유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취소 유예 사실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체재기간이 지난 사람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1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경우
2. 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9조(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 파악)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에 대하여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출국금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병역연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대상자로 통보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개정 2026.10.1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 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외공관의 장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제31조(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3. 영주권 취득 사항
4. 거주지 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사항 확인, 적정한 구비서류의 첨부 등을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2. 신청서에 당초 허가번호, 허가기간, 여행국명 및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개정 2023. 3. 2.>
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사항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기재 여부를 확인
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5. 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6. 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

제33조(허가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귀국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허가거부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즉시 귀국조치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외국민 2세 날인 등)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부모 및 본인의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

인된 사람의 여권에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 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이 곤란한 사유 등으로 재외국민 2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정하여 날인

「재외국민 2세」 확인
20 . . . 확인관서 : 확 인 자 : 인

2. 제1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제35조(병무담당 영사의 임명)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임명되었거나 교체된 병무담당 직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2026.10.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되거나 안내된 서식은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되거나 안내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30>

이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와 국외거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2-연번5 및 별표2-연번6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2.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제

29조의2, 제38조의2, 별표1-연번1, 별표4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인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0조의2, 별표1-연번10, 별표1-연번11,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종전규정에 따라 '국외이주' 사유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연번 7과 별표 3-연번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별표 2-연번 7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연번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4.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3-연번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별표3-연번4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제4조제4호 중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제7조제2호가목 중 "군전공의 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또는 현역복무"를 "군전공의 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또는 현역복무"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을 "사

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제29조의2제6항 중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을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별표 1 1의 허가대상란 중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표 9의 국외여행 목적란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표 9의 허가대상란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표 10의 국외이주의 전가족의 허가대상란 중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별표 2 1의 허가대상란 중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삭제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2016. 11.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허가취소 등 자원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① 별표 1제1호가목나)에 따라 통틀어 허가받을 수 있는 2년의 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허가기간부터 계산한다.

② 별표 1제1호가목다)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제1호가목라)의 허가횟수는 이규정 시행일 이후에 허가받은 횟수부터 계산한다.

부칙 <2019. 12.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과 별표 3에 따른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은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2조(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제출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3.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6.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3.3.2., 2024.3.8., 2025.5.2., 2026.10.19.>

국외여행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1. 단기 국외 여행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병역준비역 중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별표 1에서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라 한다) 나목에 따라 허가한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1) 1회에 1개월 이내. 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통틀어 2년 이내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연장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1회에 1개월 범위(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 '단기국외여행'이란 관광, 친지방문 등 1개월 이내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외여행 목 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추천서 제출 생략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다) 비행기표, 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2. 유학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1) 영 제124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별 제한연령(이하 별표1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이라 한다)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2)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나) 재외공관장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다)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라)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마)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가목 허가대상인 경우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바)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여행 목 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3)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상급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가) 졸업(졸업 예정)증명서 나)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예술·체육요원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3개월까지 다만,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가목의 구비서류와 같음
3. 연수, 훈련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학 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 하려는 경우 2) 고용관계가 있는 취업 형태의 훈련(OPT, 의사수련과정 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만, 연수·훈련이 '국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6호에 따라 허가	1) 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2) 1)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의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통틀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가)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나)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다)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라)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4. 농업·해양 및 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농업, 해양 및 수산계 학교 재학자 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가) 학교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5. 선원이나 승무원 선박 및 항공기 탑승	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음
	다.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음
6. 국외취업	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가) 업체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7.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가. 전문연구요원(법 37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5개월 이내)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출장명령서, 공문, 계획서, 계약서 등 출장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목적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출장명령서, 공문, 출장계획서 등 출장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8. 예술 및 체육 활동	예술·체육요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9. 범죄인에 대한 조치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국외 수용시설 수감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소일까지	가) 재외공관장을 통해 확인된 수감사실 확인 서류
10. 기 타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되, 병역이행 일자 연기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기사유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개월 범위	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인의 사유서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2] 부득이한 사유 심사 기준

사 유	심사 기준
1. 신혼여행, 친족의 경조사 등	친족의 경조사에 사회통념상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재판 출석 등	외국 법령에 따라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병간호	본인의 병간호가 불가피한 경우
4. 질병치료	가.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을 국외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으로 치료가 보다 쉬운 국가에서 질병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6. 경기(전지훈련 포함), 공연(대중문화예술 공연 포함) 등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경우
7. 출장, 회의(학회) 등	가.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출국이 필요한 경우
	나. 보충역으로 장기간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출장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8. 학위 취득, 시험 응시 등	가. 유학생이 해당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 또는 논문심사 등의 과정만 남아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나.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의 변호사 또는 의사 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
9. 기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5.5.2., 2026.8.12.>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구 비 서 류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규칙 별지 제133호 서식] *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허가 신청한 경우 생략 가능 나)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가~마목, 아목1)의 경우만 해당 다)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 취득 사실 및 보유 사실 확인 서류 * 사~아목의 경우만 해당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아목의 경우만 해당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 바목의 경우만 해당 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자~차목의 경우만 해당 사)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마~사목, 아목1)~2)의 경우만 해당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나.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다.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3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라.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마.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바.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아. 복수국적자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구 비 서 류
	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연고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아) 기타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이주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2.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을 제외한 전 자원	영 제131조제2호에 따른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37세까지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제1호 마목부터 아목2)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 · 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 · 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별표 4] <개정 2025.5.2., 2026.10.19.> (앞쪽)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

국외출생, 외국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 또는 "다"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뒤쪽 참조)됨을 안내합니다.(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래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계산례 : 뒤쪽 참조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가)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2)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의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가)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예 : 4년제 학사과정은 24세, 2년제 석사과정은 26세)]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나)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 다만, 위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위 가)의 상한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또는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다)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업 등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병 무 청 장

(뒤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 포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가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 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26. 6. 30.(산정일) → '25. 7. 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2. 「통틀어 6개월 이상」이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합니다.
   예 1) '25. 7. 1.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 '25. 7. 1.~'26. 6. 30.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개정 2025.5.2.>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

귀하

1.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국외출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 포함)가 귀국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받은 사항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 귀하께서는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받은 후 (아래 "가"부터 "다"까지 중 어느 하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나.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다. 귀하의 부·모가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3. 따라서 귀하(또는 귀하의 부·모)께서 20 . . .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실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병무지)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

국외이주자 명부

일련번호	성 명 (외국성명)	생년월일 (외국 생년월일)	국내 주소	국외 주소	관할공관 연락처	전가족 이주 전역/소집해제자		국외이주 병역연기자			비고 (신상변동 사항 등)
			등록기준지	연락처		역종/군별	계급/군번	이주사유	병역처분 (내용/일자)	연기취소 (사유/일자)	

※ 작성요령 : "이주사유"에는 전가족이주, 이주사유 병역처분변경, 단독이주 등을 기록하며, "병역처분"에는 병역판정검사 연기, 현역병입영 연기 등을 기록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태조사서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병역사항			

조 사 결 과		
국외체재 국명		
최근 1년간 국내 출입국 사항		
취업 및 영리활동 내역 * 업체(상호)명, 취업(계약)기간, 소득구분/금액 등		
병역의무부과	대상 여부	[ ] 대 상 [ ] 비대상
	비대상 사유	[ ] 재외국민 2세 [ ] 국외거주 [ ] 영리활동기준 이하(60일 미만) [ ] 국외이주 이전 사항 [ ] 입영 [ ] 국내 장기체재 계고증 [ ] 그 밖의 사유:
	유예 기간	
그 밖에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영리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병무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

○○년도(○ /분기)

년 월 일 현재

구 분			전분기말 인원	증가	감소									금분기말 인원
				신규 처분	계	의무부과					37세 초과	그 밖의 사항		
						출국기간경과 (1년6월)	출국 포기	체류기간경과 (6개월)	영주 귀국	모국수학 규정위반	영리 활동			
합 계														
전가족 이주 · 부모 동거	소 계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소집대상													
	대체복무소집대상													
	전역 · 소집해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단독 이주	소 계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소집대상													
	대체복무소집대상													
허가 간주자(영 제149조)														

297㎜×210㎜(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병역의무자 명부

일련 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등록기준지	병역사항	체재기간 (여행기간)	국외여행허가			영주권 취득 여부 (취득일 등)	신상변동 (거주지 이동·사망 등)	비고
						신청일	처리결과	허가기간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그 밖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재학하고 있는(입학예정인) 학교명	
	입학(예정)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이수과정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대학원(2년 과정) [ ]대학원(2년초과 과정) [ ]박사과정 [ ]어학연수 [ ]그 밖의 과정 _____	
	현재 재학 중인(입학예정인) 전공학과	
	현재 재학 중인 학년 * 입학예정자는 미기재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여부 * 입학예정자는 미기재	
참고사항		

위와 같이 재학(입학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외공관의 장 직인

주의사항

- 병역의무 부과에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학'사유 허가를 받은 후 재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Confirmation on the Overseas Academic Background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Name (성명)	Passport(여권)	Date of Birth(생년월일)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또는 거주증명서)	
	Address(주소)		Telephone No.(전화)
	Passport No. (Place of issue) 여권번호(발급지)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Student information (참고사항)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Academic System(학제)
	Address of School(학교 주소)		Major(전공학과)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The above person requests the concerned school authority to issue certificates or confirmations regarding his attendance if so requested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spective country of residence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요청하면 본인의 귀교 재학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Date of Issue

Duly signed, (위 동의자 서명)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5.2.>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여행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추천내용	여행국		
	여행목적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의 '국외여행 목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여행(추천)기간	* 실제 출국예정 일자부터 입국예정 일자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포함) 20 . . .부터 20 . . .까지	
	단기여행의 경우 기재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해당)	○ 전체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1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2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3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 금회 국외여행 시, 연가 사용 예정 일수( )	[ ] 공가 [ ] 특별휴가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 ] 대체휴무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추천서 발급 담당자로서, **상기 대상자의 여행목적, 추천기간, 사용 연가일수가 복무관리 등 관련 규정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후**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전화 :) (서명 또는 인)

○○○○○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 요령

▲ Personal information(인적사항)

○ Name

- Passport(여권) :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 )하여 한글이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거주증명서) : 영주권 취득자나 거주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거주증명서 상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Birth(생년월일) : 아리비아 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Address(주소) : 대한민국 및 외국의 주소를 영문으로 쓰시고 그 밑에 ( )하여 한글로 기재 바랍니다.

○ Telephone No(전화) : 대한민국 및 외국의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기재 바랍니다.

○ Passport No(Place of issue)(여권번호, 발급지) : 여권에 기재된 번호를 쓰시고 여권 발급받은 곳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 영주권 및 거주증명서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 Student information(참고사항)

○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Academic system : 학제를 기재 바랍니다.

○ Address of school(학교 주소) : 학교 주소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Major(전공학과) : 전공학과를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 아리비아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Duly Signed(위 동의자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여권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발생 및 해제 관리

발생내역								최종 병역사항			고발 및 형사처분			유효여권 소지자			해제내역		
성명	생년월일	병적번호	외국성명(국가)	체류국가	체류목적	미귀국(미제출)사유	고발시 자원구분	병역처분일	병역처분	처분사유	고발일	고발관서	형사처분결과	발급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귀국일	관리해제일	해제사유

297㎜×210㎜(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3.8., 2025.5.2., 2026.10.19.>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여권영문)		
	거주국	체류구분	[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기타 ( )	학력
				자격·면허
	국내 주소지(통지서 수령지)			통지서 수령인
	연락전화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대상 [ ]현역입영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시기	병역판정검사 희망시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경우 기재하세요. 20 년 월 일			
	입영 희망시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군 복무사항	국가명			
	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급 :)			
	복무형태 [ ]육군 [ ]해군 [ ]공군 [ ]그 밖의 형태( ) [복무중, 복무중단, 복무만료]			
입영취소 신청의 경우 그 사유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신청대상별 제출서류			
신청대상		제출서류	비고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외국의 영주권 사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사본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본인의 외국 시민권 사본,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모 관련 서류 제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적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여부 및 절차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참조

3. 입영희망원을 신청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영희망원을 취소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10.1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동의	부동의	
인적사항								

정보이용 관련사항	
민원사무 명칭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신청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이용기관)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정보제공 목적	**민원사무 처리 시 '부 또는 모'의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 여부 확인용**
정보제공 항목	위 동의자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가입 정보** - **가입일자, 상실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정보제공 기 관 명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 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및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기간까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입영 시까지**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정보(자료)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서 작성자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정보제공 항목)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명[외국명(여권 이름)]		
	주소			
	국외여행 허가기간		여행목적	

확인사항

◎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 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 ])

◎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예 [ ])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또는 허가취소 후) 미귀국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확인 [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피목적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
3.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4.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

* 유효 여권이 있을 경우 반납명령이 내려지며, 미 반납 시 무효화 조치됨

◎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시 귀국명령을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4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 [ ])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등 허가의무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예 [ ])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위 확인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그 밖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할 재외공관
	주소		
확인사항	재학하고 있는(입학예정인) 학교명		
	입학(예정)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이수과정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대학원(2년 과정) [ ]대학원(2년초과 과정) [ ]박사과정 [ ]어학연수 [ ]그 밖의 과정 _____		
	현재 재학 중인(입학 예정인) 전공학과		
	현재 재학 중인 학년 * 입학예정자는 미기재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여부 * 입학예정자는 미기재		
참고사항			

본인은 위 내용을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 병역의무 부과에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학'사유 허가를 받은 후 재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3. 8.>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국외여행 목적
	주소	
위임받는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소	
신분확인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 ] 운전면허증 [ ] 여권 발급기관/발급일자 :	
민원사항	[ ] 국외여행허가신청(최초) [ ] 국외여행허가신청(연장) [ ] 기타 :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인쇄용지(특급) 34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5.5.2.>

제○○○○- 호

병역이행 명예증서

성명: (년 월 일생)
계급: 군번:

귀하는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에도 스스로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하여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기에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병무청장 ○ ○ ○ 직인

297㎜×210㎜(백상지 220g/㎡)

No. ○○○○-

Certificate of Recognition
for Voluntary Military Service

Name : (born Month Date, Year)
Rank :
Military ID No. :

The aforementioned individual voluntarily completed his active-duty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s such, we hereby proudly present this Certificate of Recognition in honor of his noble patriotic spirit.

Month Date, Year

○ ○ ○,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 official seal

297㎜×210㎜(백상지 22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5.5.2.>

제○○○○- 호

병역이행 명예증서

성명: (년 월 일생)
계급: 군번:

귀하는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에도 스스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기에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병무청장 ○ ○ ○ 직인

297㎜×210㎜(백상지 220g/㎡)

No. ○○○○-

Certificate of Recognition
for Voluntary Military Service

Name : (born Month Date, Year)
Rank :
Military ID No. :

The aforementioned individual voluntarily completed his service in the social service personnel system.

As such, we hereby proudly present this Certificate of Recognition in honor of his noble patriotic spirit.

Month Date, Year

○ ○ ○,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 official seal

297㎜×210㎜(백상지 22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5.5.2.>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 대장

증서번호	역종	군별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비고

※ 증서번호는 연도별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 순으로 부여된 번호를 기록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